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및 같은 법을 준용하는 개별 법률에 따른 외국교육기관도 국내 학교와 동일하게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제29조 및 제30조).
- 교육부장관이 평생교육기관 등에 종사하는 평생교육사에게 보수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게 하고,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한 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7조의2 및 제48조제2항 신설 등).

II. 검토의견

개정안은 국내학교와 동일하게 평생교육을 할 수 있는 외국교육기관의 범위를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과 같은 법을 준용하는 개별 법률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음.¹⁾

1)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준용하는 개별 법률은 다음과 같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재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1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8조,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8조,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3조의6 등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평생교육이 가능한 주체로 “외국교육기관”을 추가하면서 이를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및 같은 법²⁾을 준용하는 개별 법률에 따른 외국교육기관”과 같이 별도의 정의규정 또는 약칭을 두지 아니하고 반복적으로 서술하여 법문을 복잡하게 하고 수범자의 이해를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교육부와 협의하여 다음과 같은 수정의견을 제시함.

[수정의견]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제26조(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채용) ① (생 략)	제26조(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채용)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u>학교의 장과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의 장</u> 은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할 때에는 평생교육사를 채용할 수 있다.	② ----- ----- ----- <u>학교의 장과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준용하는 개별 법률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외국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장</u> ----- -----.

2) 또한, 안 제26조제2항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뿐만 아니라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을 함께 인용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을 준용하는 개별 법률”의 범위가 불명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③ · ④ (생 략)

제27조의2(평생교육사의 보수교육) ①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6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시·군·구평생학습관, 유치원,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및 같은 법을 준용하는 개별 법률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제19조에 따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하 이 조에서 “평생교육기관등”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평생교육사에게 보수(補修)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제29조(학교의 평생교육) ① 「초·중

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및 같은 법을 준용하는 개별 법률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이하 “각급학교등”이라 한다)의 장은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평생교육의 이념에 따라 교육과정과 방법을 수요자 관점으로 개발·시행하도록 하며, 학교를 중심으로 공동체 및 지역문화 개발에 노력하여야

③ · ④ (개정안과 같음)

제27조의2(평생교육사의 보수교육) ①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6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제20조에 따른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제21조에 따른 시·군·구평생학습관, 유치원, 학교, 외국교육기관 및 진흥원(이하 이 조에서 “평생교육기관등”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평생교육사에게 보수(補修)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② ~ ④ (개정안과 같음)

제29조(학교의 평생교육) ① -----

-----외국교육기관(이하 “각급학교등”이라 한다)의 장 -----

-----.

한다. ② ~ ④ (생 략) 제30조(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① (생 략) ② 대학(「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및 같은 법을 준용하는 개별 법률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고등교육기관을 말한다)의 장은 대학생 또는 대학생 외의 사람을 대상으로 자격취득을 위한 직업교육과정 등 다양한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생 략)	② ~ ④ (개정안과 같음) 제30조(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① (개정안과 같음) ② 대학(「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u>외국교육기관 중 고등교육기관을 말한다</u>)의 장----- ----- ----- -----. ③ (개정안과 같음)
---	---

그 밖에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법문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한 자구수정 외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았음(주서본 참조).

(전문위원 이 세 진)